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범죄 고발·수사의뢰 시 보도자료 제공 등〉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6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4.
3. 회 부 일 : 2025.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 (안 제272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경우 언론기관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2조의4(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경우 언론기관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도자료를 제공한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처리결과(무혐의 처리결과를 포함한다)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도자료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해 공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¹⁾ 해당 보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보·홍보²⁾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보·홍보업무 수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보 및 홍보사무편람”을 작성하여 해당 업무의 내부 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이 편람에서 제시하는 위법행위 조치 공보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고발사건은 보도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³⁾

그런데, 해당 편람은 법률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실무 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일반 국민이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경우 언론기관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처리결과도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공보”란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홍보”란 널리 알리는 것이나 그 소식 또는 보도를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 및 홍보사무편람”, p.12. 참고자료2 참조(p.7)

4) “공보 및 홍보사무편람”은 의원실의 자료요구 등이 있는 경우 제공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이 해당 편람을 찾아볼 수 없음.

이를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선거부정 방지 및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⁵⁾

다만, 고발과 달리 수사의뢰는 위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인데,⁶⁾ 선거범죄에 대한 심증만으로 수사의뢰한 사실마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공보 및 홍보사무편람”에서도 고발 외에 수사의뢰 등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미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⁷⁾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처리결과(무혐의 처리결과 포함)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모두 통보받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보도자료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⁸⁾

5) 예를 들어, A지역에서 특정 후보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고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올 경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위반 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사무편람에 따르면 고발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경고 또는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진행되고, 수사의뢰는 위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밝히기 어려운 경우, 고발조치에 상당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하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수사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행됨.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 및 홍보사무편람”, p.13. 참고자료2 참조(p.8)

8) 현행법은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규정을 두어 선거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등을 기소한 경우 이를 당해 선거구선관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기소통지의 대상을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마저 기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의 의무가 없음. 한편, 공직선거법상 범죄(제230조~제235조, 제237조~제259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및 처리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조, 참고로 제236조는 이익의 몰수에 관한 규정임)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이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관위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제237조(選舉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59조(選舉犯罪煽動罪)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보도자료 작성 주체 등

- 공보주체: 해당 사건을 조치한 위원회
 - ※ 중대선거범죄 및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사건이라 판단되는 경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가 공보할 수 있음.
- 보도자료의 수신자: 언론 매체에 보도될 목적으로 언론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로 일반 대중이 아니라 언론기관(기자)이 1차 수신자

2. 보도자료 작성방법

- 기본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확하게 공개
 - ※ 언론에서 신고·제보(고발장 등) 접수 또는 조사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 답변(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참조)
- 조치별 보도자료 제공 원칙
 - 고발사건은 보도자료 제공을 원칙,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제공
 - 수사의뢰 등은 보도자료 미제공 원칙

나. 사안별 보도자료 제공방법

(1) 고발

(가) 원칙

모든 고발사건은 보도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제공함.

< 보도자료 유의사항 및 제공시기 조정 >

- 후보자 외의 자를 고발하면서 후보자를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하거나 후보자에게 기타조치(이첩, 행정조치 등)를 한 경우 수사의뢰나 기타조치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고 후보자의 실명, 조치결과 등 관련 내용 일체 비공개
 - ※ 동일인에 대하여 고발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은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음.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청한 경우에는 결재권자에게 보고 후 보도자료 제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고발장 접수 시 위원회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필요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보도자료 제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외

다음의 경우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보도자료 미제공시 아래 예외 중 해당 사유(중복 게재 가능, ⑥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고, 조치권 담당부서의 협조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
- ① 이미 위원회의 고발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보도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위법행위로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선거 종료 후 그 종료된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고발한 사건으로서 보도자료 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후보자 등 피고발인이 특정·유추될 우려가 있거나 고발사실이 악용됨으로써 선거질서가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선거기간 중 후보자 고발 건으로서, ▲수사기관과 법리해석의 견해차가 있거나 명확한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사건인 경우 ▲진술이나 정황증거 등에 의존하여 고발한 경우
- 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사의뢰 등

(가) 원칙

보도자료 미제공을 원칙으로 함.

(나) 예외

- 다음의 경우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사의뢰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한 후, 경고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조치 후 제공함.
- 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중대범죄로서 위원회의 단호한 대응 의지 표명이 필요한 경우
- ③ 전국 공통사안으로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④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선거의 과열·혼탁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